

ECO의 헌법과 권징조례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1 장 개체 교회와 언약 파트너들(활동교인)

마태복음 28:18-20 절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01 개체 교회

1.0101 본질과 목적

교회는 두명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가시적이어야 한다. 회중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 동참하도록 함께 약속을 맺은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각 회중은 하나님 나라 실재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회중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좋은 소식을 나누며 신성한 찬양과 영적인 의무와 상호보완적인 사역의 방식을 위해 양육의 관계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준비시켜야 한다.

1.0102 책임의 약속 (의무의 언약)

신자들이 자발적인 구조화되지 않은 모임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으로서 멤버십을 경험을 하는 반면에, 그들이 특별한 성도들 안에서 멤버십의 성경적인 비전을 이행하도록 약속할 때 구주의 목적을 최선을 다해 이를 것이다. 이러한 언약 관계들은 신자들의 영적 성숙함으로 이끄는 신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계속되는 변화들을 위해 현실적 문맥을 제공한다. 이러한 강한 관계들은 이해, 격려, 정정과 미션 훈련을 양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동반한다.

유사하게도, 어려운 회중들은 구주의 목적이 이행되도록 성령님이 그들을 다양한 다른 성도들과의 network 로 인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구별된 표현을 형성하기 위해 성도들과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의 관계들은 교회를 향한 성령의 계속되는 개혁을 위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교에 더 신실하고 효과적인 참여하도록 한다. 그들의 리그들의 영적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성도들의 리더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구주로 영화롭게 하며, 개선과 평화의 기회를 맞이한다.

1.0103 NRB 의회에 책임/의무

이 "Form of Government" 로서 사용하는 회중은 constitution 에서 노회에 의해 인가받고 인정받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공동체를 가르킨다. 공동체와 노회 사이로 들어간 멤버십 동의에 따른 이 헌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 성도의 언약의 파트너들이 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당회와 상위 의회들의 영적 리더쉽 밑에 있어야 한다.

1.02 개체교회 (회중)조직

ECO 안의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한에 의해서만 체계화 될 수 있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그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을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지를 분별할 때, ECO의 필수요건과 통치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바램을 반영하는 약속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언약과 서명을 받은 후에 노회의 단독 재량으로 그들이 노회 안에 조직된 개체교회라고 선언할 수 있다. 회중과 노회는 멤버십 동의 절차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노회 승인을 받은 후에 회중은 목회자, 장로, 집사들 선출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노회는 이 새로운 회중 안에서 새롭게 선출된 개개인들을 준비시키고, 점검하고, 안수하고, 취임시킨다.

1.03 회중 멤버십

1.0301 세례와 멤버십

세례를 통하여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된다. 멤버십의 언약을 통하여 개개인은 현지 성도들과 연결되고, 현지 공동체나 세상의 미션에 온전히 참여할 수도 있다.

1.0302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

성도의 친교는 다시 오실 구주와의 교제를 참여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누구에게 열려 있다. 성도는 성도의 한 부분이라고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목회자의 보살핌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은총을 베풀 것이며, 이러한 영적인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성찬의 성체를 받는데 환영을 받는다.

1.0303 언약의 파트너들로서 멤버십 입문

당회가 결정한 의미 있는 준비과정을 마친 후에는 성도의 약속의 기대를 포용하기 바라는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믿음의 간증들을 들은 후에 당회의 조치에 의해서 언약의

파트너들이 될 것이다. 이전에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세례의 성찬은 이러한 새로운 멤버들과 그들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제공된다. 개개인들은 아래의 방법들 중의 하나로 그들의 믿음을 간증할 것이다.

- a. 구세주와 구주로서 예수님 안에서 공개적인 신앙고백은 성령님의 회생시키는 일이 그리스도안에서 개인의 믿음을 산출해낸 후에 하는 것이다.
- b. 신앙의 재확인 은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이미 했거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1.0304 언약 파트너십의 유익함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파트너, 멤버에게도 중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격려와 지지와 수정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의 이유에 헌신하는데 있어서 멤버들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함께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성장한다.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생명의 풍요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의 공통의 미션과 이야기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언약의 파트너와 회중은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의도적인 언약을 맺었기에 은총을 입고 놀라운 축복이 된다.

1.0305 언약 파트너십의 회중 기대

각 언약의 멤버는 성도들과의 찬양, 교제,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신실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안의 신실함은 성도의 미션과 사역을 위해서 각 언약의 파트너의 시간과 달란트를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선물에 따라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신실함은 또한 재정의 stewardship 을 포함한다. 각 활동 교인은 베푸는 은혜에서 자라고, 성도의 미션과 사역의 재정의 지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킬 다른 사역분야를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과 함께 성장해야한다. 그리스도에 신실함은 성도의 미션과 사역을 위해서 각 활동 교인의 파트너의 시간과 달란트를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회중안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들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ECO의 필수 교리들을 동의하고 주의깊게 선택하고 훈련되어지며, 멘토를 받으며, 지도를 받고 적어도 1년동안은 정상적으로 멤버가 되도록 한다. 회중의 활동 교인은 다른 역량들과, 다양한 영적 달란트들과, 다른 수준의 헌신을 보인다. 당회는 효과적인 제자 만들기, 사역 분별 과정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며, 언약의 파트너들이 선교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준비시키며, 그들을 영적인 성숙함과 중요한 사역으로 양육시키는데 충실할 것이다.

1.04 교인 분류

ECO의 성도의 멤버쉽은 세례 교인이며, 활동 교인이다.

1.0401 세례 교인

세례받은 멤버는 세례의 성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1.0402 활동 교인

활동 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며 세례를 받았고, 교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교회의 치리에 순응하며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한다. 이들은 회중 모임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1.05 회중 모임

성도의 미팅은 가장 최신판인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다른 방법들과 실행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1.0501 정족수

회중은 활동 교인의 10%의 정족수로 연간 회의와 필요하다면, 특별회의까지 개최할 것이다. 회중이 자체 규정으로 요구하는 정족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단지 그런 참석한 활동 교인만이 회중 회의에서 투표하게 될 수도 있다.

1.0502 소집 회의

회중 모임은 당회, 노회에 의해 소집될 수도 있다. 또는 활동 교인의 4분의 1 이 작성할 것을 요구되어질 때 당회에 의해 미팅이 소집될 수도 있다. 회의에 관한 적절한 통보는 적어도 두 주전 주일에 예배동안에 안내와 회중의 다른 의사소통 방법들을 포함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비지니스 목록들은 회중의 모임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미팅이 이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니며 회중 모임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제한받는 것도 아니다.

1. 선출한 장로들과 이사들 (집사들, 회중이 선택한다면)
2. 목사와 스태프의 head 를 소집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집을 해산시키는 것
3. 구매, 담보, 이체 또는 송금 부동산 거래
4. 노회는 ECO 라는 다른 장로회로 회중을 해산하도록 요구하거나 장로회가 다른 개혁주의의 단체로 회중을 해산을 요구한다. (둘 중의 어느 경우라도 언약 파트너들의 3분의 2 의 상당한 수가 요구된다.)
5. 단체 회중의 규정들과 조례 또는 다른 공동의 운영 자료들에 대해서 개정을 승인하는 것과 해산이나 통합 또는 멤버 승인 투표를 요구하는 어떤 공동의 조치에 대해서 개정을 승인하는 것

법에 의해 허용될 때마다 기독교와 단체의 두 가지 비지니스가 동일한 미팅에서 다루어질지도 모른다.

1.0504 moderator 조정자

목회자와 스태프의 책임자가 대개는 회중의 모든 모임을 조정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목회자와 스태프의 책임자와 관련이 있는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경우, 그 목회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회자나 장로에게 미팅을 주재하도록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

1.0505 서기와 회의록

당회의 서기는 대개 회중의 모든 모임의 서기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회중은 그 미팅의 비서를 선출할 것이다. 그 당회는 회의록 최종서식을 검토하고 승인할 것이다.

1.06 당회

1.0601 목적과 구성

모든 회중은 당회에 의해 운영된다. 당회는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회중 언약 파트너들 중에서 또한 그들에 의해서 회중의 목회자들과 협력 목회자들과 함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당회가 세운 규정에 따라 회중은 장로들의 수와, 서비스의 시간, 당회 정리를 결정할 것이다. 최소수는 세 명의 현 장로들과 조정자로 구성될 것이다.

1.0602 당회의 모임

목회자는 대체적으로 당회의 모든 모임들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면 그 목회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회자나 장로에게 주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회중이 다른 절차나 관행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정족수를 포함한 당회의 모임들은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의 가장 최신판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당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정기 미팅을 계획할 것이며, 조정자의 소집에 의해서나, 두 명 이상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임을 갖게 될 것이다. 모임의 모든 회의록과 당회의 조치들은 유지될 것이며 어떤 언약의 파트너에게나 노회의 요청에 의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1.0603 당회의 책임

당회는 회중을 운영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미션을 지도할 책임과 권위를 가진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의 특징은 말씀의 선포이며, 성례를 올바르게 올리고 훈련을 실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따를 것이다.

a. 경배와 회중에게 교육적인 삶을 제공할 것이다; 회중이 정기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적절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설교하도록 할 것이다; 회중의 예배 계획과 순서를 감독할 것이며, 전도, 공휴, 정의의 사역으로 회중을 인도할 것이다; 또한 다른 회중들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육성되도록 할 것이다.

b. 성찬을 정기적으로 주관할 것이며 제공할 것이다; 세례의 집행에도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다. 성례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올바르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새 신자들과 회중을 위해 의무를 실행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c. 회중과 새신자를 위한 디사이플십의 수단을 계획하며 공급할 것이다; 회중의 공동의 삶을 공급하고 양육시킬 것이다; 멤버들을 받아들이고 해산할 것이다; 회중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재정을 감독할 것이다. 장로와 집사로서 섬길 멤버들을 훈련시키고, 점검하고, 임명하고 취임시킬 것이다. 스투어드십과 기독교인의 삶의 상황에 관해서 회중을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집사들과 이사회들과 다른 조직들의 사역을 지도할 것이다. 교리와 실재안의 오류에 대하여 증인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Rules of Discipline 에 명시된 것과 같이 회중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상황들로

d. 노회의 장로 위원들을 선택할 것이며 공통의 관심사나 염려들을 노회에 건의하거나 이 헌법 constitution 이 개정되도록 제안을 할수도 있다. 회중을 섬기라고 Section 2.0401 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회가 선출할 수 있는 장로 위원들의 최대의 수는 투표권을 가진 목회자들의 수와 일치할 것이다. 당회는 장로들의 위임원들 안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차별과 불평등 즉 인종, 민족성, 성, 재능/무능력과 나이차이가 나는 부분들에서 대의권을 향상시키기도록 격려를 받을 것이다.

e. 언약의 파트너들의 명단과 세례자들의 명단을 보유할 것이다. 당회는 규정에 의해서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회중의 회원에게 제휴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f. 당회는 연간 예산을 수용하고 경영할 것이며 그것을 회중에게 발표할 것이다. 당회는 프로그램과 재산을 위해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을 구매할 것이다. 당회는 목회자들과 풀 타임 직원들의 건강과 복리 후생과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커버하는 총회의 계획안에

회중이 참석하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멤버십 동의안에 설명되어져 있다. (회중이나 총회가 상응할 만한 커버리지를 공급하는 대책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g. 매해마다 독립적인 재정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며 보고서가 회중과 노회에 발표될 것이다.

h. 회중의 사역과 미션을 연간 평가하게 될 것이며, 상호적인 의무와 최선의 실행방안들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노회에 보고될 것이다.

제 2 장 안수와 위임 사역

에베소서 2 장 10 절, 4 장 11 절-13 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01 하나님의 선교는 질서있는 리더십을 요구한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이 그와 화해하는 미션을 계획하셨고 교회가 화해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참여하며, 그의 일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투입되도록 하는 일을 의무화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십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그 리더십이 안수받은 리더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모델로, 특별한 형식의 리더십을 수행하라고 부르신다. 교회는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끄는 강한 리더들을 계발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목회자들,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구조 안에서 특별한 역할들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안수받은 평신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ECO 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직제 사역자들은 장로, 집사, 목회자인 반면에 ECO 는 또한 평신도 리더십이 효과적인 사역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0101 직제 사역자들의 자격

장로들과 집사들은 당회에 의해 안수를 받아야 하고 취임을 받아야 하며, 목회자들은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하고 취임을 받아야 한다. 안수를 하는 조직들은 모든 직제 사역자들이 ECO의 필수교리들을 고수하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고수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이 헌법안의 Rules of Discipline 에 따라 사역으로 부터 제거당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당회와 노회에게 부여하게 된다.

2.0102 준비와 직제 사역자들의 안수

공동체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한 준비과정을 결정할 것이고, 임명받기 위해 지원하는 자들이 이 Form of Government 에 모든 요구사항들과 맞는지를 확인받을 것이다. 점검 과정을 통하여 예배를 위해 설명한 후에 지원자들은 그들의 서원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 공 예배에서 그 안수를 하는 공동체에 대표자들에 의해 안수를 받게 될 것이다.

2.0103 안수 서약

a.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며 구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분이 만물의 구주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합니까?

b. 당신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예수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되심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권위를 가진 것을 믿습니까?

c.ECO의 필수요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믿어야할지를 가르치는 신뢰할 만한 설명문이라는 것을 주저함없이 받아들이고 채택합니까?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그것들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까?

d.당신은 성령에 의존하면서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의 고백들에 인도함을 받으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미션에 헌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겸허하게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합니까?

e. ECO의 정부 형태과 징계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까? 당신이 지도하면서 동료 장로들, 집사들, 목회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질 것입니까?

f.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평화, 연합, 순결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신실할 것을 약속합니까?

g.당신은 에너지, 지성, 창의력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것을 추구하며 기도할 것입니까?

h.(1) (장로를 위함) 당신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찬양, 양육,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잘 지켜 보는 신실한 장로가 될 것입니까?

(2) (집사를 위함) 당신은 사람들을 섬기고 염려를 권고하고 필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인도하는 신실한 집사가 될 것입니까?

(3) (목회자를 위함)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미션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까?

2.0104 회중을 향한 질문들

a. (장로들과 집사들을 위함) 이 회중의 언약의 파트너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ECO의 Constitution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회중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장로들과 집사들로서 (호칭)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데로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되시며 그를 섬길 것을 동의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기도할 때와 다른 안수 직제 사역자들이 손을 얹고자 할 때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조정자가 안수 받는 자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현재 교회와 회중의 장로 또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던지 간에 구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 아멘

b. (목회자를 위함) 회중의 언약의 파트너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ECO의 Constitution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회중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목회자 (협력 목회자, 부교역자)로서 (호칭)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그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그(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그녀)가 우리를 인도하는데로 따르기를 동의합니까?

우리가 그(그녀)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그 (그녀)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동안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까?

그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그(그녀)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그녀)의 돌봄을 받기며, 그 (그녀)의 종된 리더십과 권위를 존중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후보자가 가능하다면 안수 받을 때와 취임을 할 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노회는 기도와 안수하며 후보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후보자로 안수할 것이며, 특별한 목자의 책임을 맡기며, 그(그녀)를 취임시킬 것이다. 노회는 다른 안수 받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안수하는데 초청할 것이다.

노회의 사회자가 말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이 회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 목회자 (협력 목회자, 부교역자) 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던지 간에 구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
아멘

2.03 장로들의 사역

장로들은 목회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미션에 회중의 신실함과 영적 건강상태를 살펴 보는데 권위와 책임감이 주어진다. 장로들은 회중에 의해서 선출될 것이다.

2.03 집사들의 사역

대체적으로 집사의 성경적인 직무는 회중에 의해 활용화 될 것이다. 집사들은 회중 내에서 또는 회중을 뛰어넘어 교제와 돌봄을 함양시키는 사역을 인도한다. 집사들은 또한 설교하거나 가르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회중은 예배의 형식을 결정할 것이며 당회는 집사들의 사역을 검토하고 지시할 것이다.

2.04 목회자들의 사역

목회자들은 사역에 교육과 리더십의 은사를 특별히 강조하며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목회자는 조직이 세상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도록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함이 양육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필수요건들에 고수하는 것 뿐 아니라, 노회들은 사역을 위해서 후보자들이 일에 적절히 훈련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훈련은 학사 학위와 대개는 인가 받은 신학교의 성경학이나 신학의 석사 학위까지 포함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사역의 직접 경험과 멘토링도 포함할 것이다.
사역 후보자들은 중요한 신학과 성경적 적응력과 목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설명해야만 한다.

2.0401 목회자들의 분류와 책임

목회자들은 노회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역과 소명은 장로회와 책임 위원회에 의해서 확인을 받으며, 그들은 목회자를 점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데 책임이 있다.

장로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목소리를 갖게 된다; 투표권은 회중 내에서 목자의 역락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최대 배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또한 신학과 사역의 핵심 통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목회자들의 분류와 책임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목회자와 스태프 책임자-목회자/스태프책임자 또는 협력 목회자/스태프 책임자는 회중에 의해 부름을 받고 노회에 의해 취임을 받으며 당회와 회중 모임을 조정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또는 그녀는 목소리와 투표권을 소유한 노회의 멤버이다.

협력 목회자-협력 목회자들은 회중에 의해 부름을 받고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에 의해 취임을 받는다. 그들 또한 목소리와 투표권을 소유한 노회의 멤버들이다.

c. 부교역자-부교역자들은 당회나 당회의 규정에 따라 목회자나 스태프의 책임자에 의해 부름을 받는다. 목회자를 임명하는 위원회로서 활동하는 당회는 회중에게 부교역자를 협력 목회자로 임명하자는 제안할 수도 있다. 이 때 부교역자들은 목소리와 투표권을 소유한 노회의 회원이다.

d. 과도기의 목회자-과도기동안의 목회자는 당회에 의해 부름을 받고 회중이 목회자가 없는 과도기 동안에 있게 되는 자리이다. 과도기 동안의 목회자는 목회자들과 스태프의 책임자들로서 노회에서 동일한 책임과 특권을 가질 것이다.

e. 승인받은 사역에 목회자-목회자들은 현지 회중 외의 승인받은 사역을 섬기도록 권위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승인받은 사역들은 장로회, 교육 기관, 병원, 다양한 미션 필드의 서비스를 포함할지도 모른다. 노회는 목회자의 사역을 승인하고 매해 검토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승인받은 사역에 목회자들은 또한 현지지역 ECO 회중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도록 기대될 것이다. 승인을 받은 사역들에 목회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파트타임 교역자로서 섬긴다면 투표할 권리도 허용될 수도 있다.

f. 연합 목회자-목회자는 다른 조직에서 안수를 받을 수도 있으며 ECO의 연합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 연합 목회자들은 ECO의 필수요건들을 고수해야만 한다. 노회가 연합 목회자가 적합한지를 결정할 것이다.연합 목회자가 non-union ECO 회중의 목회자나 스태프의

책임자로서 섬기게 될 시에는 연합 목회자는 노회에서 목소리와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단지 목소리만 가지게 될 것이다.

g. 명예 퇴직 목회자-목회자들은 명예퇴직 직위를 요청할 수도 있다. 명예퇴직 목회자들은 그들이 부교역자나 과도기 기간의 목회자로 섬기지 않는 한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노회에서 투표권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 목회자는 목소리와 투표권을 부여받는 회중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도록 격려를 받는다.

2.0402 동료 평가

목회자들과 사역들은 상호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의 기회를 가질 때 더 건강해 진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다른 목회자들과의 동료 평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평가의 목적은 더 훌륭한 미션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서로를 위해 코치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동료 리뷰는 아래와 같다:

- a. 각 다른 현재 사역이 건강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 b. 각 다른 사역을 위한 미래의 목적을 분석할 것이다.
- c. 도전들과 장애들이 그러한 목적들과 만나는지를 고심할 것이다.
- d. 각 다른 신체적이고 영적이며 관계적이며 감정적인 건강 상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동료평가는 노회나 관련 네트워크(5.0201 보시오)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역 위원회 아래서 적절한 동료 평가는 적어도 연간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노회는 확실히 할 것이다.

2.05 특별한 서비스를 위한 위임

2.0501 훌륭한 미션의 사역을 위한 직제 사역자들의 발전

노회와 회중의 미션과 사역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전체적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집사들이 더 확장된 수준으로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은 자주 유리하게 작용한다. 직제 사역자들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공급하고, 성찬을 집행하는 일을 위임받을 수도 있는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 첫째, 그들은 당회와 목회자나 스태프의 책임자의 감독 아래 회중 내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섬길 수도 있다. 둘째, 장로나 집사는 회중을 위하여 또는 새로운 교회 발전을 위해 목회자나 스태프의 책임자의 역할로 섬기도록 위탁받을 수도 있다. 둘 중의 어떤 역량으로 섬기던지 개인을 평신도 목회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당회는 성찬 운영을 주관할 것이고 또한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2.0502 당회와 목회자나 스태프의 책임자 아래 회중 내에서 예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은 단위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적합하다. 이러한 작은 단위들은 소그룹, 선교 공동체들, 수양회들, 지역사회 회중들의 리더들과 하우스 교회 모임들을 포함하지만 이들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목회자와 당회가 회중 내에서 그러한 예배를 의뢰를 받는 사람들을 살필 것이다. 이 위임은 12 개월동안 이어질 수도 있으며,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2.0503 목회자와 스태프의 해드로서 회중 내에 예배

당회와 다른 책임감의 위원회와 상의하에 노회는 현지역의 회중이나 새로운 교회 발전의 목회자나 스태프의 책임자의 역할로 섬기도록 위임받는 권한을 장로나 집사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노회의 승인 아래 이러한 개인들은 당회나 회중 모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법의 허가 아래 성찬식을 수행할 수도 결혼을 거행할 수도 있다. 노회는 이러한 위임 기간동안 신학적 교육과 사역 기술 발전 또는 지속되는 멘토십을 포함하도록 하는 훈련을 확실히 할 것이다. 이 위임은 12 개월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무자들이 회중을 위하여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임 기간동안 노회의 구성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노회 미팅에서 목소리와 투표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제 3 장 ECO 의회

출애굽기 18 장 24-26 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3.01 노회

3.0101 목적

언약 공동체로서 노회는 회중의 양육과 유익을 위해 사도적인 권위를 행사한다.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초청하심을 알게 될 수도 있다.

3.0102 멤버십

노회의 회원들은 회중들이며, 예배에서 취임을 받은 목회자들이며, 승인받은 사역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며, 명예퇴직을 목회자들이다. 정상적으로는 노회는 20 개 이상은 아니며 적어도

10 개 미만으로 지역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 네트워크들은 지리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5.0201 을 보시오)

3.0103 의무

노회는 아래와 같은 권위와 목회자의 책임감을 가진다.

a. 회중과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언약의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b. 노회로 새로운 회중을 인가하고 수용한다.

c. 회중을 다른 장로회나 교단으로 해산시킨다.

d. 특별한 케어나 취임받은 목회자가 없는 회중을 관리 감독하며 당회의 조정자를 임명하는 일을 실행한다.

e. 그들의 미션이 중지되었을 때 회중을 해체한다.

f. 특별한 회중들 넘어서서 성만찬식 수행의 권위를 가진다.

g. 목회자들을 받고, 해산하고, 점검하고, 목자의 케어를 공급하며 목회자들을 훈련시킨다.

h. 목회 후보자들을 등록시키고, 해산 시키고, 점검하며 그들을 부름받은 예배로 안수한다.

i. 회중을 넘어서 서비스로 사역자들의 부르심을 승인한다.

j 회중과 목회자들 사이의 다른점을 안정화 시킨다.

k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투표한다.

l. 총회를 포함하는 ECO 의회에 위임자들을 선출한다. 이러한 위임자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노회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차별과 불평등, 즉 인종, 민족성, 성별 능력/무능력과 나이 차이가 나는 영역에서 대의권 증진하도록 격려 받는다.

m. 회중의 선교적인 효율성을 촉진하고 격려한다. 각 노회는 사역과 미션에 대한 연간 평가와 보고 하는데 있어서 회중을 돕기 위한 도구를 개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연간 보고서들은 각각 회중의 당회가 있는 노회에 의해서 점검되고 토론되어질 것이다.

3.0104 모임

노회는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고 책임감들을 조직될 것이며 선출된 위원회와 위임회에 권위를 위임한다. 노회는 정해진 모임을 적어도 1년에 두 번 개최할 것이다. 노회의 모임은 정족수를 포함하여,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가장 최신판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노회가 다른 절차나 실행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멤버 회중에 의해 선출된 각 장로 위원회는 정규 모임에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2.0401 에 명시된 대로 투표권을 가진 멤버 목회자들 또한 정규 모임에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노회의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들은 운영의회를 선출하며 3.0103 에 명시된 대로 모든 문제들을 투표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또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로회에 운영의회를 위임할 것이며 회중의 인가와 해산과 목회자들의 취임 또는 해고는 제외될 것이다. 각 노회는 구조들과 절차들에 정해져 있는 행정적 작업들의 설명서를 발전시킬 것이다.

3.0104 회의

노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책임들을 이행하도록 조직할 것이고 선출된 위원회들과 위원회 위임에 권위를 위임할 수도 있다. 노회는 일년에 적어도 두 번 정규 미팅을 개최할 것이다. 정족수를 포함한 노회의 미팅은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최신판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노회가 다른 절차와 실행을 수용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말이다. 회중에 의해 선출된 각 장로 위임원은 정규회의에서 투표자격이 있다. 게다가 2.0401 에 명시되었듯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목회자들은 정규회의에서 투표자격이 있다. 노회의 투표자들은 치리의회를 선출하고, 3.0103 에서 명시된 대로 모든 문제들을 투표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투표자들은 회중의 인가나 해산 목회자의 취임이나 해고를 떠난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노회 치리 의회에 또한 권위를 위임할 수도 있다. 각 노회는 구조나 절차를 명시하는 행정 운영 설명서를 개발시킬 것이다.

3.0105 요구된 위원회들

a. 사역 위원회

각 노회는 목회자 관계를 위해서 폭넓은 책임을 지는 사역 위원회를 선출할 것이다. 사역 위원회는 적어도 장로회에 의해 선출된 8 명의 구성원으로,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다. 2 명이상이 동일한 회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 사역위원회는 어떤 당회나 노회의

목회자에게 가능할 것이다. 자체 규정에 의해 노회는 사역 위원회의 권위와 기능들을 위임하고 결정할 것이다.

b. 상임 사법 위원회

각 노회는 Rules of Discipline 에 명시된 대로 상임 사법 위원회를 선출할 것이다.

3.0106 노회 운영 의회

노회 운영 의회는 동일한 수의 장로들과 목회자들 구성된 장로회에 의해 결정된 많은 개개인들로 구성될 것이다. 노회 의회는 장로회의 기록과 재정, 정책과 절차에 책임을 질 것이며, 노회에 의해 의회에 위임된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다. 노회 의회는 법인 간부를 선출할 권위를 가질 것이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스태프를 고용할 것이다. 의회는 최고 직제 사역자의 연간 실적을 검토할 것이다.

3.0107 기록

노회는 행사들의 완벽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유할 것이며 어떤 당회나 노회의 목회자의 요구에도 그 기록들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각 노회는 독립적 재정 평가를 연간 정리할 것이며 회의록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3.0108 재정

노회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스태프 고용하고, 예산을 수용하고 자료들을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미션을 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여긴다. 노회의 기능과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성도들에게 비용을 나눌 수도 있다.

3.0109 정책과 절차

각 노회는 사역으로 후보자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격려하는 과정들과 절차들을 정립할 것이다.

각 노회는 회원들 사이의 성적인 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정책을 수용할 것이다. 노회의 동의를 가진 특정한 당회가 자체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정책은 노회의 회중들을 지배할 것이다.

3.02 대회/총회

3.0201 목적

대회는 ECO 가 노회들과 성도들을 후원하고 가이드를 주는 최상의 의회이다. 대회는 ECO 의 미션의 비전과 신학을 평가하고 선포할 것이다.

3.0202 의무와 권위

- a. 대회는 상호 격려를 위하여 장로회들의 연결장치를 공급할 것이다.
- b. 세계선교 파트너들, 다른 교단과 사역 파트너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 c. ECO 의 헌법과 필수요건들을 유지할 것이다.
- d. 적당하고 필요한 곳에 ECO 를 위하여 서비스(연금과 건강 보험)를 제공할 것이다.

3.0203 대회 위임원의 모임

대회 위임의원들은 적어도 연간 모임을 갖을 것이다. 미팅은 ECO 선교를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를 인도하면서 노회들과 교회들이 각자의 미션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할 것이다. 정족수를 포함한 대회의 모임은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가장 최신판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장로회가 다른 절차나 실행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대회 위임원들을 대회 운영 이사회의 회원들을 선출하고 제거할 권위를 가질 것이며 적어도 두 노회에 의해 대회에 종속된 이 헌법 제안된 개정안을 수정하고 투표할 것이다. 대회 투표자들은 속한 노회에 위해 노회로 부터 위임을 받은 개인들이다. 노회는 동일한 수의 사역자와 장로를 위임할 것이다. 자체 규정에 의해 노회는 각 노회로부터 위임 위원회 수를 결정할 것이고, 각 노회는 적어도 한 명의 장로 위임 위원과 목회자 위임 위원에게 자격을 줄 것이다.

3.0204 대회 실무 위원회

대회 실무 위원회 6 명에서 9 명 사이의 개인으로 구성될 것인데 적어도 세 명의 사역장로와 나머지는 안수 목회자로 구성된다. 대회 실무 위원회 다음과 같은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 a. 노회를 설립하고, 나누고 해산하며 그들 사이에 논쟁을 해결하며 어떤 행위라도 운영 이사회의 3 분의 2 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b. ECO 안에서 유니온 노회를 수용하고 승인하며, 어떤 행위라도 운영 이사회의 3 분의 2 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c.연간 예산을 수용하고 기금과 다른 재산을 받아들이고, 보유하고, 경영하고, 매매하며 소비한다.
- d. 법인 직제 사역자들을 선출하고 (대표를 포함하여) 스태프들을 고용한다.

e. 필요하다면 ECO 를 에큐메니칼과 선교 파트너들에 대표한다.

f. 활동과 기능을 위해 운영 설명서를 개발 시킨다.

g. ECO 의 트레이드마크와 트레이드네임과 다른 지적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의 비인가 사용에 대하여 보호한다.

h. 준거법 아래서 비영리 단체의 모든 다른 권위를 행사한다.

3.0205 기록

대회는 행사들의 완벽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유할 것이며 어떤 당회나 노회의 목회자의 요구에도 그 기록들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각 노회는 독립적 재정 평가를 연간 정리할 것이며 회의록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3.0206 재정

대회의 기능과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대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노회와 연결 네트워크의 지출을 배분한다.

3.0207 정책과 절차

대회는 구조와 절차를 명시한 행정 운영 설명서를 개발시킬 것이다.

제 4 장 민사 권한과 재산

시편 24 장 1 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

시편 127 장 1 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4.01 법인체와 재단 이사

민사법이 허용한다면, 각 개체교회, 각 노회와 총회는 합법적으로 법인 단체를 형성되고 유지할 것이다. 법인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개인 이사들이 재단 이사들은 장로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중의 멤버십에 의해서나 재단 이사들을 위한 노회의 규정에 따라 선출될 것이다.

4.0101 회중

이렇게 조직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권한을 포함하는 법 아래서 비영리 단체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a. 교회나 개인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하되, 부동산의 구매, 매각, 저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재단 이사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회중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처리한다.

b. 이러한 재산을 받아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재산의 명의를 보존하고 지킨다.

c. 회중의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한다.

당회는 그러한 회중을 위해 법인체의 집권 서류가 다른 법인 집권 이사회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비영리 집권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집권 이사회가 당회의 권위아래서 운영될 것이다. 당회나 다른 집권 이사회는 법인체의 주요 실무직무자로서 일할 장로를 선출할 것이며,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정해진 법의 요구에 따라 다른 법인 직제 사역자들을 선출할 수도 있다. 재단 이사들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당회의 권한과 의무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4.0102 노회

조직된 노회의 단체나 개인 이사들은 교회나 개인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한다. 그러나 노회는 공동 서명의 사용권을 지시하거나 회중이나 다른 단체의 회원에 의해 발행된 공채를 담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빚 담보를 하는 어떤 문서의 영향력도 보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신용 담보나 증서 혹은 보증 동의

노회의 집권 의회는 노회의 법인 집권 이사회로 작용한다. 그러한 집권 이사회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정해진 법의 요구에 따라 단체 직제 사역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조직된 대회 법인은 교회나 개인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하되, 이러한 재산을 받아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재산의 명의를 보존하고 지킨다.

대회의 법인은 대회에서 수용되고 지시된 목적을 위하여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할 권한을 소유한다.

총회 법인의 권한과 의무가 총회의 권한과 임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총회 집권 이사회를 통하여 실행되는 총회의 지시, 검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총회의 실무 위원회는 총회 법인 집권 이사회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한 집권 이사회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정해진 법의 요구에 따라 법인 직제 사역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제 5 장 Ecumenicity and Union

고린도후서 13 장 11 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5.01 에큐메니시티 (그리스도교 각파의 세계적 통합 상태)

ECO 하나님이 모두를 그리스도 몸, 교회 안에서 한 믿음, 구주, 한 세례로 부르셨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삶의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려져 있는 구주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구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에 헌신한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역의 연합을 원한다. 개혁주의 전통의 후세들로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한 표현이다. 우리는 공통적인 목적이 가능한 한 부분과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대화를 주목하면서 다른 기독교 그룹들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바란다.

5.02 개혁주의와 장로교인

우리는 개혁주의와 장로교 교회들의 모든 표현들과 우리의 공통의 역사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삶을 위한 우리의 권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역사적 성경적이고 정통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선교와 사역안에서 파트너가 되기를 또한 바란다.

5.0201 동호 네트워크

ECO 법을 고수하는 연합 증인 성도는 PC(USA) 의 회원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 설립된 PC(USA) 노회의 부분으로 기능을 하는 동안에 지리학적으로 동호 네트워크와 연결되거나 ECO 의 노회와 연결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

5.0202 연합 회중

ECO와 연합하는 동안에 회중들은 역사적으로 PC(USA)나 다른 개혁파 교단 회원들은 멤버십을 유지하기 바라고 필수조건들을 인정하고 가르친다. 이들은 분별의 기간과 과정과 적당한 때에 소집된 회의에서 회중의 3분의 2가 투표한 후에 ECO의 노회가 연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합 증인은 노회와 비등할 만한 각 교단의 치리회와 의사소통의 형태로 되어질 것이다. 양 교단의 법이 다를 때마다 두 개의 헌법 중에 의무규정을 허용규정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0203 연합 노회

ECO 노회는 미국장로교의 노회는 다른 개혁파 교단에 속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등한 공의회 혹은 치리회와 연합회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각기 소속한 치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양 교단의 법이 다를 때마다 두 개의 헌법 중에 의무규정을 허용규정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연합 노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각 노회나 치리회에서 연합노회 계획을 2/3의 표결로 승인함으로써 창립될 수 있다. 연합하는 각 조직의 관할권을 가지는 대회나 치리회가 그 연합계획을 승인할 것이다.

5.03 다른 교단들

선교, 사역, 협력관계가 적합한 치리회들에 의해 조직화되고 승인되고 ECO의 법과 필수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공동 개신교 유산들 중에, 파트너십과 연합 회중 증인은 격려를 받을 것이다.

제 6 장 헌법

6.01 헌법의 구성

ECO의 헌법은 필수조건들, 정부의 형태, 그리고 권징 조례들을 포함한다.

6.02 헌법 개정

노회들이 다음 아래와 같이 이 헌법 안에서 변화를 위해 ECO의 대회를 제안할 수도 있다.

a. 두 노회들이 제안된 변화들 안에서 동의해야만하고 변화들을 상위 단체를 제안해야만 한다.

b. 총회는 찬반 투표를 위하여 노회의 헌법에 제안된 변화내용들을 개정하고 보낼 수도 있고, 노회의 3분의 2의 승인이 요구된다.

c. 필수조건들에 어떤 개정도 현 대회와 투표권을 가진 3분의 2의 찬성표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개정을 위한 각 노회의 찬성표는 현 노회의 투표자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할 것이다.

권징 조례 (Rules of Discipline)

갈라디아서 6장 1절-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0 교회 권징의 목적

1.1 모든 사람들은 본성, 영향, 선택과 행동에 근거한 죄인들이다. 죄는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있으며, 기생할 수 있으며, 전염성이 있으며, 불능적이다. 교회의 목적은 구속적이다: 죄를 고치며 제재하며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와 긍휼을 성취해낸다; 구성원들을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고 제재한다; 개개인들과 의회들의 약점들과, 실수들, 위법행위들을 수정한다. 권징의 적절한 사유는 성경에 따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또는 ECO의 법에 위배되는 믿음과 실재에 반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이다.

1.2 교회 권징은 잘못과 위법의 본질에 적합해야만 한다. 개인이나 의회의 모든 권징의 행동은 그 목적을 염두하면서 주위깊게 따져 봐야만 한다. 모든 경우들에서 있어서 교회 권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정과 절차들은 모두 알려져야만 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3 전통적인 성경의 의무는 견해의 차이를 갈등없이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절하려는 것이며 권징 조례 (Rules of Discipline)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 교인들의 성경적인 의무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마태복음 5:25) 약화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그 성경적 의무는 다툼, 불평, 비행, 부정의 조절과 해결을 가져오도록 모든 교인의 의무를 유지한다.

2.0. 사법절차

2.1 사법적인 절차 두 종류들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교정 사건과 징계 사건을 말한다. 교정 사건이란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 또는 행동의 결여나 불이행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위 공의회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 징계 사건이란 교회 교인이나 직제 사역자가 위법 행위로 질책받을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직제 사역자들이란 목회자들, 장로들과 집사들이다. 위법이란 교회 교인이나 직제 사역자의 성경이나 ECO 의 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이다.

2.2 특정한 교회에 징계를 위한 책임과 권위는 당회에 속한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목회자들의 규율을 위한 책임과 권위는 장로회에 속한다. 교정 사건과 소송의 책임과 권위는 장로회와 총회에 있다.

2.3 각각 의회는 Rules of Discipline 의 규정 아래 있는 모든 다른 의회의 판결,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인정한다.

2.4 사법적 절차의 관할권은 교회 제직자 또는 교인이 교회의 관할권 포기선언을 할 때 종결된다. 징계 사건의 피소자가 교회의 사법권을 포기 선언해야만 한다. 서기나 지정 서기는 치리회에 피소자의 이름, 포기 날짜와 사실을 포함하며, 조사나 재판 도중 포기한 날짜와 사실을 포함하고, 또한 제기된 혐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당시 사안의 포기 선언과 진행 상태를 보고할 것이다.

3.0 사법적 위임

3.1 각각의 노회는 그 노회 안에 속한 목회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상임사법 전권위원들을 선출할 것이다. 5 개의 노회들은 설립된 후에는 교회회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할 것이다. 5 개의 노회들은 설립되지 않는다면 교회 회의가 특정한 사건들을 처리할 사법 위원회를 선출하게 된다. 각 위원회는 가능한 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거의 동일한 수로 구성되도록 한다. 위원수가 홀수일 될 경우에는 추가 인원은 목회자이거나 장로가 될 수 있다. 대회의 위원회는 각 산하 노회 가운데서 동등하게 배분되어 가능하다면 5 명 이하로 구성될 것이다. 노회 위원회는노회 산하 각 개교회로부터 장로들의 한 명 이상이 될 수는 없으며, 5 명 이하로 구성될 것이다.

3.2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6 년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3 개조로 선출받을 것이다. 한 조 내의 위원수가 반 이상이어는 안 된다. 처음으로 선출되었을 때 한 조는 2 년간 .

두번째 조는 4 년간, 세 번째 조는 6 년동안 봉사하게 될 것이다. 사임, 사망, 또는 그 밖의 어떤 다른 이유로 생긴 공석은 선출 공의회가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선출하여 충원될 수도 있다.

3.3 6 년 전체 임기를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에서 봉사한 사람은 6 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4 년이 경과한 후에야 재선될 자격이 있다. 아무도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3.4 상임 사법 전권 위원회 정족수는 구성원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위하여 당회가 사법 위원회가 되며, 사법 절차를 위한 당회의 정족수는 당회장 및 장로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5 교회와 의회가 어떤 사건의 대상자가 된다면, 그 교회나 그 의회나 그 의회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그 소송의 심리나 상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3.6 사법 위원회가 이러한 권징 조례 (Rules of Discipline) 에 의해 맡겨진 능력과 책임을 실행할 것이며, 이러한 조례 아래 종속되어있는 어떤 사안이라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권위가 주어진다. 사법 위원회는 사전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증인들과 증거물들의 목록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당사자로부터 서면 변론 취지서들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증거의 합법적인 발견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발견을 위해 합법적인 스캐줄, 변론 취지서들과 소송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며,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완벽하고 공정한 청문회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른 행위를 가질 수도 있다. 사법 위원회는 청문회의 운영에 대한 완전한 권위와 파워를 갖으며, 모든 당들과, 증인들, 변호인, 대중들의 행동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끝까지 적절한 존엄성과 예의를 유지할 것이다. 청문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 절차를 위한 질문들은 증인들의 증거 능력은 당사자들이 들려진 기회를 가진 후에 사법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0 교정 사건

4.1 교정 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의 정식 서기의 고소를 접수함으로 시작된다. 고소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주장한다.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 또는 행동의 결여나 실패의 서면 진술을 말한다. 고소 제기는 그 자체가 결정이나 결의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4.2 의회나 사법 위원회의 행위나 결정은 집행 유예에 의해 중단될 수도 있다. 집행 유예를 실행하기 위해 고소자나 상고인은 정식 서기에게 고소장이나 항소 통보나 결정과 행동에 도전하는 기본의 간략한 진술서와 손해에 짧은 성명서를 포함한 유예 요청 또한 보낸다. 여기서 손해란 결정과 행동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말한다.

공식 서기는 고소와 항소 심의 자격이 주어진 사법 위원회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지체없이 집행 유예 청원서를 전달한다.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고소나 상소의 심의권이 있는 사법 위원회의 위원들 중 최소 세 명이 서명하였을 때 집행 유예가 청원될 것이다. 집행 유예는 소송의 쟁점에 증거를 구성하거나 절차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4.3 변칙 고소는 90 일 이내에 제기될 것이다. 그러한 고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장로회를 상대로 대회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회 회원으로 등록된 목회자나 장로 (b) 장로회를 상대로 대회에 소송을 제기한 당회 (c) 동일한 수준의 타 의회를 상대로 그 의회가 소속한 차상위 의회에 소송을 제기한 어느 한 공의회 (d)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장로회에 소송을 제기한 교인

4.4. 고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술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b) 날짜, 장소와 상황들을 포함한 증거없이 제기된 잘못된 결정, 행동, 행동 결여와 불이행. (c) 변칙 고소 이유; (d) 당사자가 고소를 제기할 권한의 이유를 밝힌고소인의 관심이나 관계 (e) 요청한 구제책

4.5 고소 사본이 피고인인에게 전달될 것이며, 고소인은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이나 인편 전달의 공술서를 첨가하여 정식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할 것이다.

4.6 피고인은 고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간단 명료한 답변서를 정식서기에게 접수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고소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답변서는 고소에 혐의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고,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된 주장은 부인할 것이며, 그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사실들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4.7 교정 소송에서 심리는 사법 위원회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교정 소송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은 출석할 자격이 있고, 변호인단에 의해 대신될 수도 있다. 그러나 ECO 회원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변호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법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누구도 재직하는 동안은 그 위원회 앞에 변호인으로서 출두하지 못할 것이다. 변호인이 유급 대표나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4.8. 만약 사법 위원회의 위원이 소송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거나, 어떤 당사자를 적극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관여한다면 그 위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사법 위원회의 어떤 위원이라도 어떤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기 받을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타당성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4.9 변칙 고소 공판에서 당사자들은 최초 진술을 할 기회와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당사자들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며, 고소인에게는 논의를 개시하고 마감할 권리가 있다. 사법 위원회는 사건을 판결하도록 비공개로 만날 것이다.

4.10 사법 위원회는 소송을 판결할 것이다. 만일 고소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면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명하거나 사안에 관해 추후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위 의회에게 지시한다. 판결문이 준비되고 그 판결문은 사법 위원회의 위원장이 판결문의 사본에 서명할 때 최종 판결문이 된다. 판결문의 사본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달될 것이다. 판결은 사법 위원회를 위임한 공의회의 지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5.0 징계사건

5.1 징계사건은 범법 혐의의 서면 진술서가 당회 서기나 노회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착수된다. 그 진술서는 구술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만일 진실이 증명되는 경우 징계결정에 귀결할 만한 혐의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5.2 범법 혐의 서면 진술서를 접수하면,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지정 서기는 더이상 조사하지 말고 피소인의 이름이나 범법 혐의의 성격을 밝히지 않고 혐의 사실만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조사 위원회에 진술서를 회부해야 한다. 당회는 조사나 고발 중이면 교인에게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도 없고 노회도 사역자에게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없다.

5.3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것으로 주장된 자에 대해 성희롱 행위를 범했다는 주장의 서면 진술이 목회자를 상대로 접수되었을 때에는 진술서를 접수 받은 지정 서기는 즉각 사법 위원회에 이 행위를 통보한다. 사법 위원회의 위원장은 3 일 이내에 노회의 2 명의 위원들을 지명하여 (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니다) 혐의자를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유급 직위정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비용 부담은 고용 기관이 가능한 한 부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회가 부담해야 한다. 직위 정지를 받은 목회자는 목회업무, 행정사무, 교육이나 감독 업무를 돌볼 수 없으며, 세례식, 장례식 또는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

5.4 주장된 범법 행위가 접수된 후에는 혐의자에게 관할권을 가진 의회는 고소를 접수할 여부를 결정할 조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조사 위원회는 (a) 피고인에게 주장된 범법 서면 진술서의 사본을 제공할 것이다. (b) 범법 혐의에 의한 사실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다. (c) 모든 관련된 관련 서류들과 문서들과 기록들을 조사한다. (d) 연관된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심리한다. (e) 범법이 피소인에 의해 범행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가능한 근거와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f) 고발된 사건이 그 성격, 유효성과 증인들의 신용도와 유효한 증거를 적절히 검토한 후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g) 고소들을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의 관할권을 소유한 공의회에게 보고한다. (h) 만일 고발들이 접수되고 준비되면 그 사건을 기소할 회원들로부터 1 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소 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에) 지명한다.

5.6 피고인에 대하여 고발이 접수되기 전에 조사 위원회가 고발이 접수될까 염려하는 연관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해결의 대안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사위원회는 그것의 승인을 위해 사법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5.7 조사 위원회가 고발을 접수를 결정했다면, 심리시 이 고발을 지지할 증거를 딸 수 있는 사실의 개요를 포함하여, 그 고발을 서면으로 피소인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 개인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그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바라는지를 피소인에게 물어야 하고, 사법 위원회에 제안할 견책을 지적해야 한다.

5.8. 만일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조사 위원회는 당회 서기나 노회 지정 서기에게만 그 사실의 서면 보고서만을 접수하며,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던 그 개인에게 통보해야한다. 만일 고발이 접수 안 되면, 조사위원회의 기록의 처리는 당회나 노회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5.9 고소가 범법 혐의가 있던 때부터 3 년이 지나거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일자로부터 1 년이 넘어서 접수되어서는 안 된다. 단 둘 중 먼저 일어난 일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다른 사람의 성희롱의 예인 경우는 3 년 제한 기한이 적용될 수 없다. 범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일자에 상관없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희롱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a) 18 세 이하나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 세 이상의 어느 개인; 또는 (b) 그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제 사역이나 직위의 남용을 포함할 때의 어느 개인.

5.10 모든 징계사건은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를 통해서 공의회에 의해 접수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그 교회의 대표이며 그런 자격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해당 공의회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매 고소는 변호를 매겨야 하고 범법을 구성한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매 고소는 혐의 받은 행위의 수행의 시간, 장소,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매 고소는 기소를 위해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것의 뒷받침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의 설명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한다.

5.11 징계사건의 재판은 사법 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징계사건의 각 당사자들은 출두해야 하며, 변호인이 대신 할 수도 있지만 ECO 회원이 아니라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대행할 수 없다. 사법 위원회의 재직 중인 동안에는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 앞에 출두할 수 없다. 징계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인을 얻지 못하면, 사법 위원회가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합리적 변호 비용은 사건이 발단한 공의회에 의해 위임하고 상환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유급 대표나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5.12 만약 사법 위원회의 위원이 소송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거나, 어떤 당사자를 적극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관여한다면 그 위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사법 위원회의 어떤 위원이라도 어떤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기 받을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타당성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5.13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편의 요구나 그 자체의 발의로 당회나 사법 위원회는 그 절차의 어느 과정에서 출석회원 2/3 의 투표로서 당사들이나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5.14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은 그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피소인은 무죄로 인정된다.

5.15 사법 위원회는 모든 예비적 반론과 절차 진행의 질서나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떤 반론을 확정해야 한다. 당회나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하거나 정의의 촉진을 위해 고소에 대한 개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런 개정이 고소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피소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절차가 질서 있게 되어 있고 고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소인이 매 고소에 대해 "유죄"나 "무죄"를 주장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그 변론 주장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피소인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 "무죄"의 주장을 기록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인 "유죄"를 주장하면 그 공의회는 손상의

증거, 경감, 복권과 배상의 증언 청문하도록 진행해야 하며 부과될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5.16 “무죄”의 주장을 기록해 두고 당사자들에게 최초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소 위원회는 피소인에 의한 반론과 대질심문을 조건으로 고소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피소인은 기소위원회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그때 추가 증거를 소개할 수 있는데, 다만 피소인을 대신하여 소개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추가 증거는 피소인에 의해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한다. 당사자들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고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5.17 사법 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당회원이나 사법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신중한 심의 후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매 고소를 분리해서 투표하고 회의록에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피소인에게서 고소의 유죄를 찾기 위해서 당회나 사법 위원회는 그 고소 내에서 그 타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발견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은 모든 증거의 비교와 고려에 의해 고소를 입증할 물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시켜줄 때 나타난다. 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투표권이 있는 사법 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3 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 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했을 때, 위원장은 공개회의에서 고소에 대한 평결을 각각 분리해서 공포해야 한다.

5.18 피소인이 유죄로 판명되거나 유죄라고 답변 한 후, 사법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손상입은 정도, 경감, 복권과 배상에 관한 증언을 제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증거는 어느 편이나 본래 원고나 그 사람의 대리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범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이 피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사법 위원회는 그때 부과할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그런 결정에 이어 공개회의에서, 사법 위원회 위원장은 그때 책벌을 선포해야 한다.

각 고소에 판결을 진술하는 서면 결정과 견책의 정도에 대한 결정은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명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며, 서기나 의회의 지정 서기에 의해 접수될 것이다. 서기나 의회의 서기는 그 결정에 이름이 적힌 각 당사자에게 결정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6.0 징계 소송의 책벌과 회복

6.1 교회 책벌의 등급은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정지, 그리고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다. 견책은 범법에 대한 책벌의 최하 등급이고 선포했을 때 완료된다. 그것은 책망과 동시에 범법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6.2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은 책벌의 최하등급의 바로 위다. 그것은 책망, 그리고 당회와 사법 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기간을 명하는 일과 함께, 범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사법 위원회는 감독관(들)에게 수여된 구체적 권한과 복권 상담의 목적을 감독기관과 책벌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기술서는 진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과 만일 감독 복권상담이 만족스럽게 완수되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술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3 직제사역이나 회원으로부터의 일시 정지는 더욱 심한 범법에 대한 보다 높은 책벌의 등급이고, 일정한 기간 또는 당회나 사법 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만일 일시 정지 기간이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의해 한정되었다면, 사법 위원회는 감독관에게 주어진 구체적 권한을 감독기관과 유죄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직제사역으로부터의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직제사역의 모든 기능의 수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일과 어떤 직책을 갖거나 수행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일 목회자가 직제사역의 직무수행으로부터 일시 정지되었다면, 노회는, 만일 사건의 상소가 계류 중이 아니라면, 목회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당회서기나 지정 서기를 통해 정지 기일의 종료나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근거하여 회복을 공의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책벌을 부과했던 공의회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공의회가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회복을 승인해야 한다.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정지 기간의 완료나 책벌에 정해진 감독 복권 상담의 종결 이전에 회복되도록(서기를 통해) 책벌을 부과했던 공의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그 공의회는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그런 회복을 승인할 수 있다.

6.4 직제사역이나 회원으로부터의 박탈이 책벌의 최고 등급이다. 직제사역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취소하고, 그 사람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없이, 모든 직제사역에서 박탈되는 책벌이다.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회원권이 종결되며, 그 사람이 모든 명부에서 삭제되고 그 사람의 안수와 모든 직제사역에의 선출이

취소된다. 목회자가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 아닌 직제 사역으로부터 박탈되면, 노회는 그 목회자에게 회원증명을 주어 그 목회자가 선택한 교회로 보내야 한다. 만일 목회자 관계라도 책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7.0 상소

7.1 교정이나 징계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수정, 교정, 결정을 반복 시키려는 목적으로 하위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위 공의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어느 편 당사자나 서면 상소장을 접수시킴으로 항소 판결의 상소를 착수할 수 있다.

7.2 교정 사건의 경우 상소장은, 집행 유예가 위의 4.2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면 상소 중인 그 결정을 실행하는 앞으로의 어떤 결의도 중지시켜서는 안된다.

7.3 징계 사건의 경우 상소장은, 만일 적절하게 시간에 맞추어 접수되었다면, 하위 공의회에 의한 앞으로의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단, 예외는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권의 일시 정지 또는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경우, 그 판결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상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의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7.4 신청에 따라 상위 공의회는 사법 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 있다. 사법 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 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7.5 상소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a) 절차상 변칙; (b)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기회를 거부;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g)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h) 책벌의 지나친 가혹성

7.6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된 후 전달된 후 45 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서면 상소장은 서기나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사법 위원회를 선출한 하위 공의회 지정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소하는 당사자는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 서기에게 상소장의 사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 그리고 있을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 그리고 있을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리우는 상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공의회;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상소장과 함께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을 동봉할 것); (e) 상소를 위한 근거인 청문을 처리한 사법 위원회의
과오 진술서

7.7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권 당사자들과 각 사람들에게 배달할 것이다.

변호인단이나 변호인단들은 상대 당사자들이 서명한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지정서기에게 접수시킬 것이다.

7.8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당회서기나 하위 공의회 지정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목록화 시켜 주어야 한다.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위 공의회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7.9 하위 공의회 지정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 진술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
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하위 공의회 사법 위원회가 보충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모든 질문서는 상위
공의회 사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7.10 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그 서면 적요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상소인은 오류 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 혐의에 관해
상소장에서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다.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접수를 상소인이 하지 못할 때, 사법 위원회는 이를 상소의 포기
받아들인다.

7.11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상위 공의회 서기와 함께 변호인의
서면서에 응하는 서면 적요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 지정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7.12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과 접수 시기의 만료에 따라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사법 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칙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논점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사전 청문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7.13 사법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소를 제기를 위해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변호인에 의해 사법 위원회 앞에 출두 수 있는 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7.14 청문회에서 사법 위원회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물을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15 청문과 심의 후에 사법 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사법 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파기하든지, 번복하든지, 조절하든지, 그 사건을 새 심리를 위해 반송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7.16 서면 결정서는 준비되어져야 하고,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사법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명할 때 그렇게 된다. 그 결정은 사법 위원회를 임명한 공회회의의 지정 서기에게 접수되고, 소송에 당사자들에게 배달되어질 것이다.